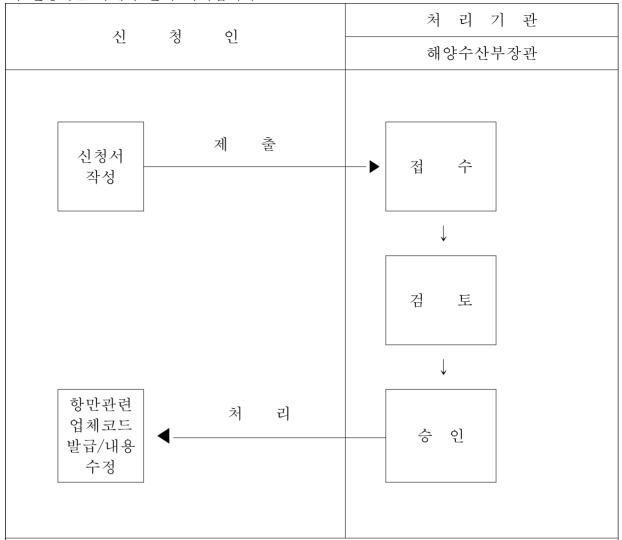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 제13조 관련]

항만관련업체(신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사유		[] 1. 신규설립 2. 양수 3. 합병 4.				상속 5. 휴업 6. 폐업 9. 기타			
		· 변	경	<u></u> 전			변	경	후
면허관할청		[][][]	청명			[][][]] 청명	
업 체 코 드		[][] - [] - [][][]][]	[][] - [[] - [][][][]
면허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 기타업체인 경우 사업종류		81. 부선관련업체 82.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갖지않은 100톤미만 자영업체 83. 공사작업(조선업등) 관련업체 84. 수산관련업체 91.무등록 항만업체 또는 항내운항 92. 조선소 93. 외국선사 국내지사 94. 원양어업 95. 연안어업 96. 선박수리 99. 기타							
구	구 분 신규 또는 변경전					변경후			
업체명	한글								
	영문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_	
	등록번호								
대표자	국적/ 성명	[][]/				[][]/			
전화번호		()				()			
고지서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번호(개인인 경우) □				주민번호(개인인 경우) □			
고지서 수령지	신규 또는	우편번호 주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변경전								
	변경후								
신고자		성명 휴1		대전화	대전화 이		소	처리결과수신	
								1. phone	e, 2 . e-mail
비고						담	당자	확인	
신고일: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본 신청서는 이메일(portmis@korea.kr) 또는 FAX(044-200-6249)로 신청하여 야 합니다.
- 2 변경신고 시 변경된 부분만 변경 후 란에 작성하십시오.
- 3. 업체코드가 없으면 코드란에는 기입하지 말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 4.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은 해운관련업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제출하십시오.